

마포농수산물시장 폐쇄 행정명령

마포 농수산물시장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10월8일

마포구청장



1. 적용지역 : 마포농수산물시장 전지역
2. 폐쇄기간 : '21. 10. 9. 00:00 (토) ~ 별도 조치시까지
3. 처분대상 : 마포 농수산물시장
4. 처분내용
 - 마포 농수산물시장 일시적 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5.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장소가 감염병 의심 대상자가 있거나 감염병병원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여 위와 같이 처분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8.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0. 담당부서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02-3153-8560)